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3
----------	-----

제출년월일 : 1997. 12.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시키고, 공중위생법 제40조(수수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소 영업 양도·양수신고 및 이·미용사 신규 면허 및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함.

2. 주요 골자

- 1)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징수방법)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을“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 참가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으로 함.
- 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 중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차. 공중위생업관계란에 (5) 영업양도·양수신고란, (6) 이·미용사 신규면허란, (7)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란을 정하고,
3. 참가신청등 가. 입찰참가신청을 신설코자함.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징수방법)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을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으로한다.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차. 공중위생업관계란중 (4) 변경신고란 다음에
(5) 영업양도·양수신고란, (6) 이·미용사 신규면허란,
(7)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동	읍·면	
(5) 영업양도·양수신고	1 건	신규영업허가또 는신고수수료에 준함	신규영업허가또 는신고수수료에 준함	
(6) 이·미용사 신규 면허	1 건	2,300	2,300	
(7)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 건	2,000	2,000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중 3. 참가신청 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참가신청등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입찰참가신청	1 건	1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 5 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파주시수 입증지를 <u>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u>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철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파주시수 입증지를 <u>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u>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철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징수방법) ----- <u>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u> <u>입찰참가신청서, 각종신고서</u> ----- ----- ----- ----- -----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신 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2.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 지정, 확인등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규정에 따라조례로 정하고자 함.
				동	율·면			
	차. 공중위생업관계	(5) 영업양도·양수신고	1 건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함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함			
	(6) 이·미용사신고면허	1 건	2,300	2,300				
	(7)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	1 건	2,000	2,000				
(신 설)	3.입찰등록신청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지방자치법제128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징수할수 있으며 입찰참가수수료를 정수코자함.	
	가. 입찰참가신청서		1 건	10,000				